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 범위 확대 >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87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조정 사항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석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3. 24.

다. 회 부 일: 2025.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 범위 확대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 시행 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 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u>수립</u>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 ----- ----- --- <u>수립,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반영</u> 등에-----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 수립 관련 부처간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지난 201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열리고 있음.

- 현행법 제3조는 정부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러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 하위법령에도 위임하지 않아 관광진흥 정책의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 관련 사항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정부의 환류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현행법 제3조의 관광진흥계획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와 같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명시할 경우 법률 조항의 해석상 여지를 줄여줌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할 것일지 여부와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 체계가 중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유사 입법례 >

법률명	내 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법률명	내 용
	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기초법」 제7조제5항에 따른 <u>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u>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u>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u>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u>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u> 5. (생략)

문 의 처

02)6788-5377

□ 관광진흥 기본계획

- **(개요)** 관광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관광진흥의 기반 조성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관광기본법 제3조 1항)
- **(주요 사항)** 관광진흥정책의 기본방향, 국내외 관광동향, 관광진흥 기반조성 및 부문별 정책, 자원 확보와 배분, 제도개선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등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관광기본법 제3조 2항)
- **(절차)** 관광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장 국무총리, 13개 행정기관의 장 참여)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 **(개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관광기본법 제3조4항)
- **(주요 사항)** 전년도 성과와 한계, 실적 및 당해연도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절차)** 관계 부처 합동, 기본계획 과제별 실적과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추진실적 평가 절차

- **(시행계획 수립 시)** 전략회의 심의를 거친 5개년 관광진흥기본계획의 각 과제별로 소관 부처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총괄하여 수립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 추진 실적과 종합 여건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 분석
- **(기본계획 수립 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기반으로 전 회차 기본계획(지난 5년)에 대한 실적,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기본계획에 포함
 - 기본계획 수립 시 관광 업계,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 의견 수립 추진
 - 위 사항들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안건 상정 후 심의